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 3. 14(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1. 4. 12(화)
- 다. 상정일자 : 2011. 4. 12(화)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과장 전완택)

- 가. 보상기준을 낮춰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
- 나. 보상제외대상중 총 피해면적기준 변경 (안 제5조제1항 )
  -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총 피해면적을 “1,000㎡ 미만인 경우”에서 “330㎡ 미만인 경우”로 변경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동기)

- 가.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지역은 주로 산지 인근 농경지

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 면적 기준을 1,000㎡에서 330㎡로 낮추어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나.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 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수렵장 개설 및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등 예방 위주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